

# 경상북도체육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정

제정 2021.09.2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1년 경상북도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경상북도체육회 100주년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경상북도체육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제2조(설치) 경상북도체육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경상북도체육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한다.

1. 경상북도체육회는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100주년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2. 기념 사업 및 기념행사 발굴
3.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
4.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장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인
3. 위원 20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경북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되며, 경북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실무

직원은 간사로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필요시 명예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명예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5조(위원 등의 위촉)** ①위원은 체육계, 문화·예술계, 건축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구성하고 관련 분야별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부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 호선으로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0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보선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의 소집 등)**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후원조직 구성) 위원회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일반에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체육회 상근임원 및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체육회 예산규정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자문료, 자료조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추진위원회

제15조(추진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구성)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위원은 제4조 제1항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추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세부사업별(기념행사, 편찬제작, 기념대회)사업 추진계획
2. 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각종사업 예산편성(안) 작성
3.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4.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또는 별도 과제 등을 위임하여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의사) 추진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의견제시)**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당해 위원회가 작성한 자문의견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 **제 5 장 사무처리 및 직원**

**제21조(사무처)** ①사무처 내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②해당부서는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사무처장, 회장 보고를 거쳐  
집행한다.

③해당부서에는 해당부서의 장 등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해당부서는 기념사업 종료 후 잔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부 칙 (2021. 0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